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70
----------	-----

2024. 12. 11.(수)  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11월 26일

-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)

가. 제안사유

○ 상위법령인 「관광진흥법」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선발방법을 현행화함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관련 조문 정비(안 제5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을 상위법인 「관광진흥법」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됨.

#### 관광진흥법

제48조의8(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  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,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- 안 제5조는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도록 규정함.
  - 「관광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,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도지사는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5조(선발) ① 도지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 관광 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선발) ① 도지사는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